

업무제휴 협약서

2022. 2. 8



해외건설협회
International Contractors Association of Korea



CI GUARANTEE
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

본 업무제휴 협약서는 해외건설협회(이하 "협회"라 한다)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(이하 "조합"이라 한다)가 체결한 업무협약서의 세부 실행을 위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1조 (협약원칙)

- ① "협회"는 "협회"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건설 수주 및 발주 정보, 정책, 제도, 홍보 등을 "조합"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기로 한다.
- ② "조합"은 "협회"가 제공하는 각종 해외건설 관련 정보 및 정책지원을 활용하여 "조합" 조합원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여 해외건설 보증지원 확대를 성실히 수행하기로 한다.

제2조 (해외건설 관련 정보제공 및 보증지원)

- ① "협회"는 "협회"가 보유한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등 해외건설관련 각종 수주·발주정보를 전산매체, 간행물 등의 형태로 "조합"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기로 한다.
- ② "협회"는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"협회"의 주요업무, 정책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"조합"이 기계설비건설업체의 해외보증이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·지원 한다.
- ③ "협회"는 "조합"이 해외보증업무를 확대할 수 있도록 회원사, 해외보증 유관기관(정책금융기관 등)과의 업무연계 등을 통해 보증알선 등을 지원하기로 한다.

제3조 (해외지부 활용)

- ① "조합"은 "협회"가 운영하는 해외지부에 해당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.
- ② 제①항에 따라 "조합"은 "협회"의 의사결정 기간 등을 감안하여 해외지부 파견에 정일 기준 최소 1개월 이전에 "협회"에게 요청하여야 하며, "협회"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.
- ③ 해외지부 활용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에 대해서는 "협회"는 최대한 호혜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"조합"에게 청구하기로 한다.

제4조 (해외 홍보활동 참여)

- ① "협회"는 "협회"가 주관·시행하는 아래의 홍보활동에 대하여 "조합"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 협력한다.
 1. 해외발주처 및 금융기관 홍보를 위한 해외시장조사단 파견
 2. 해외 주요 발주처 초청 설명회(GICC)
 3. 해외진출 건설업체 대상 설명회
 4. 기타 "협회"가 추진하는 각종 홍보활동 및 행사
- ② "조합"은 제①항의 홍보활동에 대하여 해외보증 확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한다.

제5조 (해외공사 사업성평가 제도)

- ① "조합"은 "조합" 조합원의 해외보증 심사를 위해 "협회"가 운영하는 해외공사 사업성평가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.
- ② "조합"은 "협회"의 사업성평가제도를 활용함에 있어 "협회"의 '해외공사 사업성평가업무처리규정'에 따른 절차 및 규정을 따른다.
- ③ "협회"는 중소·중견기업의 해외보증지원 확대를 위해 운용중인 "공동보증제도"의 협약보증기관에 "조합"의 참여를 즉시 추진키로 한다.

제6조 (정책개발·지원 사업 등 공동 참여)

- ① "협회"는 해외보증·금융지원 정책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수행함에 있어 "조합"에게 공동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② "조합"은 "협회"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참여여부를 결정하며, 참여키로 결정한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한다.

제7조 (교육프로그램 활용)

- ① "협회"는 운영 중인 해외건설 교육프로그램 중 "조합"의 요청이 있는 경우 "협회"의 비용으로 각각 3명 이내의 "조합"의 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4회에 걸쳐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다.
- ② "조합"이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자체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함에 있어 해외건설 관련 "협회"의 임직원에게 강의를 요청한 경우 "협회"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한다.

제8조 (정보이용료 납부) "조합"은 "협회"가 지원하는 해외건설 관련 각종 수주 및 발주 정보, 사업성 평가제도, 정책, 교육, 홍보 등을 활용하는 대가로 "협회"에게 아래와 같이 정보이용료 형태로 매년 납부하기로 한다.

구 분	내 용	비 고
납부 금액	30,000,000원	연간납부액 기준
납부 주기	연 2회 (반기납) - 1회 : 매 1분기(3월말) - 2회 : 매 3분기(9월말)	2022년 2월부터 적용

제9조 (협조사항)

- ① "협회"와 "조합"은 이 협약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.
- ② "협회"와 "조합"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기로 한다.

제10조 (협약의 효력 및 자동갱신) 이 협약은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최초 협약 시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. 다만, 제12조(협약의 해지)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별도의 통지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.

제11조 (추가협약의 체결)

- ① "협회"와 "조합"은 이 협약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를 거쳐 추가 협약을 체결하여 운용하기로 한다.
- ② 제①항에 의한 추가협약은 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. 다만, 이 협약과 추가협약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추가협약의 내용을 우선 적용하기로 한다.

제12조 (협약의 해지) "협회" 또는 "조합"이 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3조 (기타사항)

- ① 기타 이 협약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"협회"와 "조합"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.
- ② 이 협약서는 2부 작성하여 "협회"와 "조합"이 기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부 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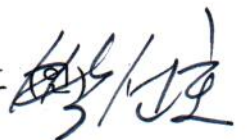
제1조 (시행일) 이 협약은 2022년 이후엔 정보이용료 납부로 연회비는 면제키로 한다. 또한, 정보이용료 미납시 본 협약의 효력은 자동상실한다.

2022년 2월 8일

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9길 42

해 외 건 설 협 회

회 장 박 선 호



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9

기 계 설 비 건 설 공 제 조 합

이 사 장 이 용 규

